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339 발의연월일: 2025. 2. 21.

발 의 자: 장철민·김한규·이용우

강선우 • 박지원 • 진선미

진성준 • 민병덕 • 황명선

채현일 • 윤준병 • 허 영

한병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학업 및 노동 등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이점차 증가하고 있음. 그러나 양질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제품들은 대부분 유료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음.

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은 당장의 생활 편의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.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 의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면 점차 소득 격차가 고착화될 우려가 커짐.

이에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 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 득층,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

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 등).

법률 제 호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5호 중 "안전성 확보"를 "안전성·접근성 확보"로 한다.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 득층, 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	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		
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	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		
법	법		
제6조(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)	제6조(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)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	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		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5. 인공지능의 공정성 • 투명성	5		
· 책임성 · <u>안전성 확보</u> 등 신	<u>안전성·접근성</u>		
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	<u>확보</u>		
6. • 7. (생략)	6. • 7. (현행과 같음)		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제17조의2(인공지능제품 및 인공		
	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)		
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		
	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		
	이용하는 저소득층, 청소년 등		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		
	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		
	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		
	<u>할 수 있다.</u>		